

제1차산업경제위원회
2015.10.14.(수) 10:00

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

산 업 경 제 위 원 회
수석전문위원 신선기

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2일

나.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3. 제안 이유

- 「동물보호법」 및 「동물보호법 시행규칙」 일부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
- 동물보호센터 지정요건을 완화(규제완화)하여 상위법령과의 입법취지에 맞게 개정

4. 주요내용

가. 동물 등록 제외 지역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4조)

나. 동물보호센터 지정 대상 요건 사항 개정(안 제 5조)

5. 검토의견

- '충청북도 동물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'은 「동물보호법」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고, 동물보호센터의 지정요건을 완화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기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은 타당함.